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아번호 682

2025. 4. 18.

자치행정위워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4.(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4. 18.

2. 예산안 규모

O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u></u> 총 계	572,838,126	528,278,252	44,559,874	8.43%
일 반 회 계	567,022,287	522,462,413	44,559,874	8.53%
특 별 회 계	5,815,839	5,815,839	-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24억 6,241만 3천 원에서 8.53% 증가한 5.670억 2.228만 7천 원으로 시 전체 일 반회계 예산의 26.16%에 해당합니다.

○ 기정예산 절감분과 행정운영경비 증·감분을 제외한 실·국·소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3,181만 6천 원보다 3.08% 증가한 9억 6,047만 6천 원이며, 바로처리 사업 운영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3,997만 7천 원 보다 0.35% 증가한 158억 9,467만 7천원이며,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 제설장비 구입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525만 5천 원 보다 1.08% 증가한 52억 3,091만 1천 원이며,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3,000만 원, 내손에 남양주 운영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억 4,762만 9천 원보다 19.85% 증가한 1억 7,692만 9천원이며, 감사업무추진 1,430만 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742만 3천 원보다 1.81% 증가한 9억 2,385만 1천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관리 1,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2.4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732억 3,563만 3천 원보다 0.66% 감소한 2,714억 3,002만 7천 원이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9,882만 7천 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추진 6,500만 원, 선배 시민 디지털 동행 교육 1,776만 6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7,980만 7천 원 보다 28.88% 증가한 486억 8,976만 원이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8억 9,778만 8천 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3억 6천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1억 9,93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36억 2,886만 3천원보다 21.34% 증가한 1,864억 836만 원이며, 문화재단 운영 13억 1,081만 원, 다산정약용문화제 1억 6,152만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9억 259만 4천 원,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19억 9,500만 원, 정약용 편빌리지 조성 6억 2,300만 원,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화사업 6억 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50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1억 1,914만 7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 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u>이미 성립된 예산</u> <u>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u>'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u>예산 성</u> <u>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u>'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O 회의록 참조
- 5. 토론요지
 - O 없 음
- 6. 심사보고 요지
 - O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